



2024 - 117호

IB를 품은 내일교실! 광주부설초

## 2024학년도 저작권 교육 협조 안내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http://buseol.gnue.ac.kr/  
교무실 ☎(062) 520 - 4363~7  
FAX 520-4384  
행정실 ☎(062) 520 - 4368~9  
FAX 520-4380

안녕하십니까?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의 **학문적 정직성 정책**에 따라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바른 저작권 사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저작권 사용 준수 및 학문적 정직성 향상을 위해 가정과 연계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에, 학생들의 바른 저작권 사용을 위한 교육 내용을 가정에 안내하고자 합니다.

### □ 저작권이란?

정의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법적 권리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또는 창작자), *저작물: 사람의 생각 또는 감정을 독창적으로 표현한 것
저작물의 종류	음악 저작물, 어문 저작물, 연극 저작물, 미술 저작물, 건축 저작물, 영상 저작물, 사진 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
저작권의 종류	1) 저작인격권 :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2) 저작재산권 :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저작물작성권 3) 저작인접권 :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 □ 학교에서의 저작권 사용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교육 목적)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비영리공연)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및 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 □ 타인의 저작물 사용








###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 방법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어떤 저작물을 이용할 것인지 결정한다.	그 저작물이 보호받는 것인지 확인한다.	저작물 이용 방식이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방식인지 확인한다.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리고 허락을 받는다.	허락을 받은 범위내에서만 이용한다.
어떤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할 것인지 결정	· 보호기간이 지났는지 ·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지 확인  보호받지 못 하는 경우 : 이용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  허용되는 방식 : 이용	저작자를 대신해서 허락할 수 있는 단체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 저작권대리중개업체  허락을 받고 다음 단계로	저작자 표시, 출처 표시를 명확히 확인하고 사용

\* 한국저작권위원회 청소년 저작권 교육용 표준교안 자료 발췌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h4>1.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확인</h4> <p>CCL은 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 제도로,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일종의 오픈 라이선스를 말합니다.</p> <p>사진, 문서, 동영상 등에 CCL 마크가 있으면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고,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조건에 맞추어 자유롭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p>	<h4>2. 저작물 이용 조건의 주요 4가지 라이선스</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저작권정보 표시 (Attribution)</b> 저작물· 저작자명, 출처, CCL 조건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li> <li> <b>비영리 (Noncommercial)</b>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영리목적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li> <li> <b>변경금지 (No Derivative Works)</b>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2차적 저작물)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li> <li> <b>동일조건변경허락 (Share Alike)</b> 저작물을 이용하여 새롭게 저작물(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는 것은 허용되되, 새로운 저작물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li> </ul>
---	---

<h4>책에서 글을 가져올 때</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처 : 책 저자, 책 이름, (옮긴이), 출판사, 발행 연도, 가져온 페이지</li> <li> 그대로 가져올 때 : 큰 따옴표 " " 로 구분 후 출처 표시</li> <li> 자신의 말로 살짝 바꾸어서 가져올 때 : 문장 끝에 별도 표시 후 아래에 출처 표시</li> <li> ~라는 견해도 있다(저작권, 2021) (출처 : 저작권, 「저작권 교육」, 30면, 2021)</li> </ul>	<h4>신문/인터넷 기사를 가져올 때</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처 : 기사 이름, 기사 제목, 신문 이름, 날짜, 면 수</li> <li> 출처 : 기사 이름, 기사 제목, 사이트 이름, 접속 날짜</li> </ul>	<h4>공유저작물의 이미지를 가져올 때</h4>  <p>출처 : 비리스타, 최유나, 공유마당, CC BY (저작물명, 저작자명, 출처, 이용조건 순으로 작성)</p>
--	---	---

2024. 9. 4.

광주교육대학교광주부설초등학교장